#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 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 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 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 지점

4. 작성기준일: 2024 년 9 월 22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5 년 10 월 2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본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AV476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AV477
수수료선취-온라인 (Ae)	AV4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AV479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AV4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i)	AV48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AV48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BU4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AV9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BU4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AV94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BU4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BB876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BP0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BO8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D9483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을 내리기 전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 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 동 펀드는 KOSPI200 지수의 등락 과정에서 사전에 나누어진 구간에서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주식 관련 자산을 분할 적립하는 전략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급변 등의 상황에 따라 매수 조건이 발생한 가격 수준에서 주식

관련 자산을 매입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 관련 자산의 매매과정에서 계획된 투자전략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 일정수준의 주식 관련 자산을 보유한 후 추가적으로 주식 관련 자산을 분할 적립하여 사전에 정하여진 조건을 달성하는 전략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정해진 조건을 달성할 때마다 주식 관련 자산의 투자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환매를 위하여 주식 관련 자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 관련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거나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환매를 위하여 주식 관련 자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식 관련 자산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매매하는 날의 주가지수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라 주식 관련 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정하는 기준이 된목표기준가격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3. 투자신탁에 자금을 신규 또는 추가로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때의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투자 비중만큼 동일한 비율로 신규 또는 추가로 납입된 자금에서 주식 관련 자산을 매입한 후 분할 적립하는 전략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의 신규 또는 추가납입으로 인하여 주식 관련 자산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매매한 후의 주가지수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라 납입한 자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4. 연속적으로 분할매수전략을 실행하는 투자신탁으로써 분할매수전략을 실행하는 동안 투자신탁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 시점 마다 주식 관련 자산의 투자 비중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마다 리밸런싱까지의 누적운용성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15. 적립투자를 하는 동안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주식투자비중을 채우지 못하고 동시에 목표달성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 16. KOSPI200 지수의 등락에 따라 주식 관련 자산을 분할 매수하므로 KOSPI200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투자신탁의 적립 구조상 주식 관련 자산의 낮은 비중으로 인하여 KOSPI200 지수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7.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목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I.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43
	재무정보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5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0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픙어쑬	· 0	9

< **요약정보** > (작성기준일 : 2024.09.22)

#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 코드: AV476)

####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5 1 1 6 매우 다소 매우 낮은 부톶 낮은 높은 높은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NH-Amundi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mark>실제 수익률</mark> <mark>변동성</mark>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주식관련자산에 분할 매수전략으로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따른 추적 오차 발생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크게스 조리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합성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 보수·비용 예시 (단위 : 천원)				
클래스 종류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판매수수료 선취-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8%이내	0.833	0.4	0.71	0.9290	174	272	374	590	1,213
판매수수료 미징구- 오프라인(C)	없음	1.233	0.8	1.00	1.3290	136	278	424	734	1,615
판매수수료 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4%이내	0.633	0.2	0.47	0.7288	114	192	272	445	945
판매수수료 미징구- 온라인(Ce)	없음	0.833	0.4	0.60	0.9287	95	194	298	517	1,150

투자비용

-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 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합성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보수)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주 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10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10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5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4) 합성 총보수·비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의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의 추정은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을 기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을 순자산총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 대비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약 [0.09]%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상기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회계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순 추정치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로 인한 실제발생 비용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최근1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종류	최초설정일	23.09.23	22.09.23	21.09.23	19.09.23	설정일 이후
		~ 24.09.22	~ 24.09.22	~ 24.09.22	~ 24.09.22	
판매수수료		4.00	6.39	-3.73	2.26	1.85
미징구형(C)(%)		1.00	0.55	3.73	2.20	1.05
비교지수 (%)	2014-09-22	-	-	-	-	-
수익률 변동성(%)		14.77	13.75	12.95	14.92	12.18

-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 (`24.09.22 기준)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현황(개,억원) (국내재간접형, %) 운용 성명 생년 직위 운용역 집합투자 운용사 경력년수 운용규모 기구 수 책임 김태희 1988 10 10,601 5.27 7.70 5.27 7.70 10 년 (차장)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 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패시브솔루션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운용전문인력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담당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유의사항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유의 사항은 투자설명서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참조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요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매수기준 불일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특정시점의 KOSPI200 지수를 기준으로 KOSPI200 지수 추종 ETF를 활용하여 분할매수 전략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분할매수는 KOSPI200 지수가 아닌 KOSPI200 지수추종 ETF의 가격을 기준으로 분할매수가 발생되므로 그 차이에 의해 분할매수의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15 시 30 분 이전: 2 영업일 기준가 매입 • 15 시 30 분 경과 후: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 15 시 30 분 이전: 2 영업일 기준가 4 영업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15 시 30 분 경과 후: 3 영업일 기준가 4 영업일 지급				
기준가	<ul> <li>산정방법</li> <li>당일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li> <li>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li> <li>공시방법</li> <li>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매일 게시 및 공시</li> <li>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전자 공시</li> </ul>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b> 됩니다. <b>단</b> ,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과세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 년 11 월 9 일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업자	NH-Amundi 자산운용㈜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nh-amundi.com)					

운용관련 자문업자	- 해당사항	없음 -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	십 가능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총액에 제한 없음
효력발생일	2025 년 10	) 월 2 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	자(www.nh-an	nundi.com), 한=	국금융투자협회 전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참고
참조				요약 재무정보에 을 참고하시기 <sup>ㅂ</sup>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바랍니다.
	부과방식-편		ㅏ 펀드특성에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종류(	Class)		집합투기	자기구(펀드) 특징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수수료)가 일시 인해 펀드가 <sup>(</sup> 수수료미징구형! 수수료미징구형! 따라서 특정시점 총비용을 지불히 * 특정시점: 수수 * 특정시점 이전 ** <b>동 펀드의 특</b>	에 징구되는 클래스입기간동안 판매토보다 상대적으로 낮기보다 낮아지게 되어 설치 이전에 환매할 수 교육 이전에 하다 하는 글래스(종류 보다) 기기 되는 글래스(종류 보다) 기기	비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수수료 미징구	판매보수가 수수 클래스(종류형편 수수료선취형보다 클래스(종류형편 * 특정시점: 수수 * 특정시점 이전 ** <b>동 펀드의</b>	수료선취형 또는 수: 드)입니다. 따라서 다 낮은 수수료를 드)입니다. •료선취형과 수수료미정: 특정시점은 1년 10 7	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비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수수료 후취	펀드 환매시점에 수수료선취형보다 환매시 판매수수 * 판매수수료: 수	판매수수료가 일시 다 상대적으로 낮게 :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료선취형 > 수수: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수수료는 책정이 되며,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 이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판매회 판매보수가 상디	사 창구)으로 판매 <u></u>	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판매경로	오프라인	홈페이에서 온데 판매보수가	라인전용으로 판매도 상대적으로 높f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니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보더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온라인슈퍼	온라인슈퍼	수익증권(종류 : 기준으로 상품· 클래스(종류형펀 판매보수가 낮	S-T 및 종류 S-P 을 노출 및 배열 <sup>5</sup> 드)로 오프라인으로 '습니다. 다만, 온	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수체감 (CDSC)	수수료미징구형 클래스(종류형편드)로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펀드의 투자기간(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자동 전환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이연판매보수(CDSC: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투자기간 경과(1 년 단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C1> C2> C3> C4[> C5])로 전환되며 펀드 가입이후 4[5]년부터 C4[C5]의 판매보수가 적용
		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펀드에 가입할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기관	법에서 정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에서 정한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가입하는 고액투자자(법인 or 개인)가 투자할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 입니다. * 고액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펀드별 가입자격을 참고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및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팀(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nh-amundi.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nh-amundi.com)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 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AV476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AV477
수수료선취-온라인 (Ae)	AV4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AV479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AV4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i)	AV48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AV48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BU4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AV9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BU4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AV94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BU4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BB876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BP0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BO8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D9483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재간접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규모 및 모집(판매)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및 판매합니다.

#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nh-
	amundi.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 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AV476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AV477
수수료선취-온라인 (Ae)	AV4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AV479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AV4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i)	AV48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AV48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BU4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AV9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BU4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AV94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BU4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BB876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BP0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BO8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D9483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시	주 요 내 용
2014.09.15.	최초설정
2014.09.19.	Class C-P1(연금저축), Class C-P2(퇴직연금) 신설
20141217	펀드명칭변경(NH-CA 스마트인베스터 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014.12.17	→ NH-CA Allset 스마트인베스터 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015.07.07	Class C-P2(퇴직연금)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삭제
2016.03.16	Class Cw 신설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2016.05.03	NH-CA Allset 스마트인베스터 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NH-Amundi Allset 스마트인베스터 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7.30	판매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16 11 00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2016.11.09	- 가입자격 추가(Class Cw)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정정
2017.04.29	- 클린클래스(AG, CG Class) 추가
2017.07.28	- 클래스 추가 (S-P, C-P1e, C-P2e)
2017.09.29	- 설정 후 3 년 경과에 따른 변동성(표준편차)사항 반영 및 위험등급 변경(2 등급 → 4 등급, 7.40%)
2017.11.24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8.09.12	- 작성일 기준 운용실적 및 재무제표 갱신
2018.10.25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7.40% → 7.77%, 4등급 유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 반영
2019.09.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에 따른 변경
2019.11.27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19.11.27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7.77% →8.58%, 4등급 유지)
2020.03.03	부책임 운용전문인력 추가(김태희 추가)
	- 클래스 추가(S-P2 클래스) 및 명칭변경
	- 투자대상자산(환매조건부매수) 추가
2020.09.18	- 펀드명칭 변경(Allset 삭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 추가)
2020.10.13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8.58% → 14.99%, 4등급→ 3등급으로 변경)
2020.11.18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변경(14.99% → 15.82%, 3등급 → 2등급으로
2021.10.08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21.05.07) 반영
2021.11.26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15.82% → 15.64%, 2등급 유지)
2022.11.16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금전차입 제한 예외 조항
2022.11.10	추가 등)
	-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생내역 추가
	- 적용 법률 변경, 용어 및 문구 변경 등 (재무상태표 등)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주인 → 김태희)
2023.06.28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계좌 세액공제)
2023.10.12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 반영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15.64%→11.75%, 2등급→3등급)
2023.11.22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2020.11.22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23.02.20 시행) 반영
2024.11.21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표준편차 → 최대손실예상액) 반영

	(표준편차 기준 11.75% → 97.5 VaR 기준29.25%, 3등급 유지)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24.03.01시행) 반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종류 S 등 수익증권 관련 설명)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2024.01.25) 반영		
2025 40 02	변동성(최대손실예상액) 변경사항 반영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29.25% → 30.17%, 3등급		
2025.10.02	<u>→ 2등급)</u>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NH-Amundi 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2	
	02-368-3600 (www.nh-amundi.com)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

(1) 운용전문인력 (2024.09.22 기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0 0 7 F (M9)	
				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원)	
	1988	차장	10년	-	-	
김태희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2019.06~현재 NH-Amundi 자산운용 파생상품운용팀					
	- 2016.05~2019.05 KB 증권 Equity 파생운용부					
	- 2014.09~2016.05 신한비엔피파리바 자산운용 구조화파생팀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패시브솔루션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 시)에 담당 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2)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4.09.22 기준)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 수익률 (국내재간접형)
---------	-----------------------------

	집합투자	운용규모	운용9	격(%)	운용	사(%)
	기구 수(개)	(억원좌)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태희	10	10,601	5.27	7.70	5.27	7.70

- 주1)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기구 분류상 2차, 3차 분류 기준)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팀운용이지만,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상기 책임운용인력이 운용한 펀드의 평균운용성과를 기재하였습니다.

#### (3)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 사항

일시	변경 전	변경 후
	책임: 김주인 <파생상품운용팀장>	채이, 기대회 교내사사표 오유티 비자.
2023.06.28	부책임: 김태희 <파생상품운용팀 차장>	책임: 김태희 <파생상품운용팀 차장>

<sup>※</sup>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2) 가입자격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3 단계 구분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제한없음(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선취-온라인 (Ae)	온라인 가입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온라인 가입자
	법 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국가재정법에
스스크미지그 오프카이 기계(6)	의한 기금,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이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i)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5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1(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
A A 7017 7 0 7 0 7 0 7 0 7 1 (0 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주수료미성구-온라인-개인연급(C-P1e(연급서욱))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
A A TRITITO O DI OLITICATIONI DI CONTROLLO DELL'ACCION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법 제 105 조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 집합투자기구의 3단계 구분(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펀드특성)에 따른 종류형 펀드의 대표적 인 차이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펀드) 특징

	수수료 선취	펀드 가입시점(혹은 추가불입시점)에 판매수수료(판매사에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일시에 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정구로 인해 펀드가입기간동안 판매보수(투자금액에서 매일계상되는 보수)가 수수료미징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총비용이 수수료미징구형보다 낮아지게 되어 장기투자에 적합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미징구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1 년 10 개월입니다.(오프라인 기준)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1 년 10 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선취형보다 낮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1년 10개월입니다.(오프라인 기준)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1년 10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
	수수료 후취	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수수료는 수수료선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며,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 이후 환매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형 > 수수료후취형 * 동 펀드의 수수료후취형은 3 년이상 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수수료미징구형 클래스(종류형편드)로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펀드의 투자기간(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자동 전환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이연판매보수(CDSC: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투자기간 경과(1 년 단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C1> C2> C3> C4[> C5])로 전환되며 펀드 가입이후 4[5]년부터 C4[C5]의 판매보수가 적용

무권유저비 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펀드에 가입할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기관	법에서 정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에서 정한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가입하는 고액투자자(법인 or 개인)가 투자할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 입니다. * 고액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펀드별 가입자격을 참고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및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500/ 0144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 지하트 지즈긔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①집합투자증권 	50% 이상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 189 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법 제 4 조제 4 항에 의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50% 미만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②주식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0% 미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취득 시
③채권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④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⑤어음	40% 이하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b>취득 시</b>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 하메 ㅈ 건 ㅂ 메 ㄷ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⑥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증권의 대여 <sup>주 3)</sup>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⑧증권의 차입 <sup>주 4)</sup>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10%이하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⑨파생상품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헷지 및 투자목적>		
⑩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오요하고 나오 청고오 사타어지의 그오피사고 기계하는 바법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⑪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원화로 표시된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매수				

- 1.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 의 경우에는 투자 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⑥ ~ ⑨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나.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3.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상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3) 증권의 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기타 운용방법(증권의 대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 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4)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거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일종목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단,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투자제한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1)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b>기업어음증권</b>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2) 파생결합증권
	(3)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4)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5)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
	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7)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 매월 말일을 기준을 산정하며 그 다음
	1개월간 적용)이 10%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 하는 행위
3. 동일법인 등이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발행한 증권	투자하는 행위
	나.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거래	가.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지선등학의 10%을 오피아어 구시아는 영규 라.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 계열회사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발행증권	취득하는 행위			
7.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사입할 수 있다.			
	(1) 법 제 235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법 제 191 조 및 제 201 조제 4 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 83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때			
	<b>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b> 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8.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시행령 제 345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30 일			
o 케미니즈 미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다.			
9.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ᆸᅩᆀᅙ	ㅁㅗ伽ㅇㄹ ㄹ ㅜ 씺네.			

#### 10. 투자한도 초과

- 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발행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구분 2 내지 5(단, 구분 4 의 가목은 제외)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나. 구분 2·구분 4 의 나, 다, 라·구분 5(단, 구분 5 의 다 내지 바목은 제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최초설정 시 주식관련 ETF에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0% 수준으로 투자한 후, KOSPI200지수의 변동에 따라 주식관련 ETF에 대한 분할매수를 수행하여 주식관련 ETF에 대한 투자비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또한, 일정수준의 수익 발생 시, 주식관련 ETF의 비중을 초기 투자비중인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0%수준으로 조정하고 다시 분할매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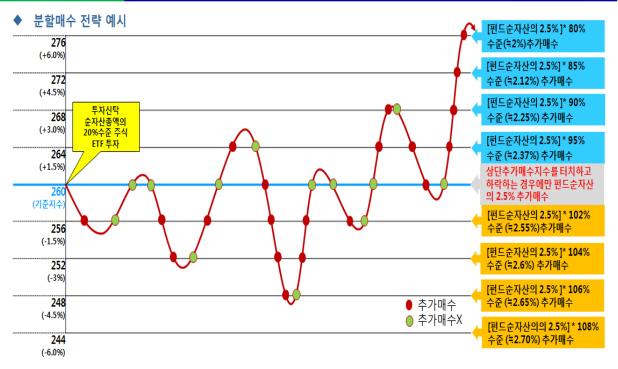
(단,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최대 펀드순자산총액의 80%내외 수준까지로 합니다)

#### ▶ 분할매수방법

• 펀드 최초설정 시 주식관련 ETF 투자비중: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0%수준

#### • 분할매수 방법

- 투자종목 : KOSPI200 관련 ETF
  - ☞ 분할매수 전략 수행 시 주식관련 자산은 개별 주식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운용할 예정이며, 이외의 자산은 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ETF와 유동성 자산 등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 기준지수: 최초설정일 익일의 KOSPI200지수 시초가. 단, 4% 수익 달성 시(Class A 수익증권 기준) 에는 조건 달성일 익일의 KOSPI200 지수의 시초가로 재조정됨.
- 추가매수: KOSPI200 지수가 기준지수의 1.5% 이상 상승 및 하락 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5% 수준으로 주식관련 ETF 추가매수. (단, 아래와 같이 추가매수비중은 변경)
  - ☞ KOSPI200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상단의 추가매수지수를 터치하는 경우: 추가매수 시 매수비중은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5%의 5%씩 축소
  - ★ KOSPI200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단의 추가매수지수를 터치하는 경우:
    추가매수 시 매수비중은 투자신탁 순자산의 2.5%의 2%씩 확대
  - ☞ KOSPI200지수가 기준지수를 상위에서 하위로 하락하는 경우: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5% 추가매수



※ 상단/하단 추가매수지수를 터치하지 않고 반등/하락 시에는 주식관련 ETF를 추가매수 하지 않으며, 당일 체결되지 아니한 매수주문은 해당일 이후로 이월되지 아니합니다.

#### ▶ 리밸런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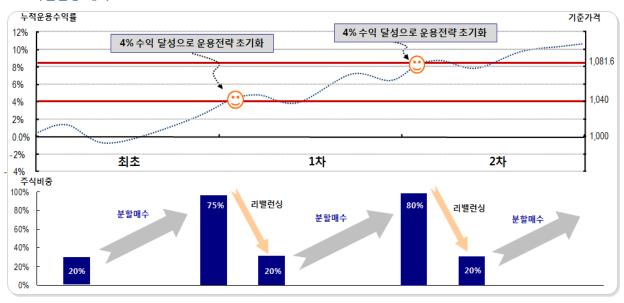
- 4% 수익이 달성(Class A 수익증권 기준) 될 때마다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20% 수준으로 주식관련 ETF의 비중을 조정. 리밸런싱 이후 기준지수를 변경하여 분할매수 지속 수행
- 리밸런싱 조건 달성 여부는 Class A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관찰하므로, 다른 클래스 펀드의 기준가격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 4% 수익에 도달 한 경우 차기 리밸런싱의 기준이 되는 투자신탁 기준가격은 직전 수익 달성한 기준가격에 4% 수익이 상승한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최초기준가격	1,000원 (최초 설정시점의 기준가격 의미)
1차 리밸런싱 기준가격	$1,000 \times (1+0.04) = 1,040$
2차 리밸런싱 기준가격	1차 리밸런싱 기준가격 x (1+0.04) = 1081.60
3차 리밸런싱 기준가격	2차 리밸런싱 기준가격 x (1+0.04) = 1124.86
4차 리밸런싱 기준가격	3차 리밸런싱 기준가격 x (1+0.04) = 1169.85
5차 리밸런싱 기준가격	4차 리밸런싱 기준가격 x (1+0.04) = 1216.65
	·
N차 리밸런싱 기준가격	(N-1)차 리밸런싱 기준가격 x (1+0.04)

□ 리밸런싱 기준가격은 소수점 셋째자리부터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합니다. 리밸런싱 기준가격 도달 여부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리밸런싱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이 모두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익분배를 감안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여 산출하는 수정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수정기준가격은 공시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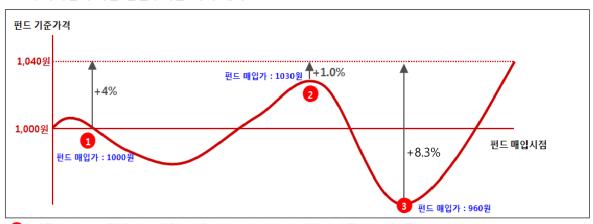
#### ◆ 리밸런싱 예시



#### • 투자 시점 별 리밸런싱 조건 달성 시의 실현 수익률

- 4% 수익 달성 및 리밸런싱 여부는 Class A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분할매수 수행 여부는 KOSPI200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므로 투자시점에 따라 개별 수익자의 실제 수익률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및 분할매수 시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시점에 따른 실현수익률 차이 예시



- 🚺 기준가격 1,000원에 펀드 매입. 리밸런싱 조건 달성 시 실현 수익률 약 4% 수준
- 2 기준가격 1,030원에 펀드 매입. 리밸런싱 조건 달성 시 실현 수익률 약 1% 수준
- 이준가격 960원에 펀드 매입. 리밸런싱 조건 달성 시 실현 수익률 약 8.3% 수준
- ※ 상기의 투자예시는 실제 투자성과 또는 정확한 리밸런싱 기준가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발생합니다.

#### (2) 투자 전략상 유의사항

- (가) KOSPI200지수의 변동을 관찰하여 주식 관련 ETF를 매입하나, 가격 변동 등의 요인으로 주식 관련 자산을 매입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격 변동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주식관련 ETF를 전략상 매입해야 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 (나) 수익 달성 후 보유 자산의 처분 과정에서 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용전략 초기화 후에도 보유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F(상장지수펀드)의 주식시장에서의 거래가격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한 공정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시장의 종가기준으로 산출한 펀드 수익률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판매보수가 상이하며 이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운용성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리밸런싱의 기준이 되는 성과(4%) 달성 여부는 Class A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다른 Class에 가입한 수익자의 경우에는 성과(4%)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리밸런싱이 발생할 수 있고, 성과(4%)를 초과하여도 리밸런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 4% 수익달성은 분할매수 전략상 주식관련 자산의 리밸런싱을 위한 기준일뿐이며, 투자자에 대한 확정수익의 지급 및 발생수익의 확정 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마) 이 투자신탁은 언제든지 매입, 환매가 가능한 추가형 투자신탁으로서 개별 수익자별로 가입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상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이 수행하는 분할매수 및 리밸런싱 전략은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의 모든 수익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투자신탁이 리밸런싱의 기준이 되는 4%의 수익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투자시점에 따라 수익자의 실현 수익률은 4%에 미달하거나 상회할 수 있습니다.
- (바) 이 투자신탁은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분할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므로 수익자의 투자시점에 따라 투자신탁의 주식 관련 ETF 의 투자비중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주식 관련 ETF 비중이 높은 시점에 투자한 수익자는 높은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반대로 주식관련 ETF 의 비중이 낮은 시점에 투자한 수익자는 시장 상승 시 투자자의 실현수익률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인 분할매수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식관련 ETF 의 매매과정에서 전체 투자신탁의 계획된 투자전략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KOSPI200 지수와 주식관련 ETF 사이에는 이론가격 및 실제 거래가격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차이에 의해 분할매수전략의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KOSPI200 지수 차이에 따른 분할매수 수행 시, 주식관련 ETF 의 가격 변동은 KOSPI200 지수의 가격 변동과 상이하므로, 분할매수전략의 결과는 투자자가 예상한 것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

####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발견하거나 또는 비교지수 산출기관이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기준지수의 변동에 따라 주식관련 ETF 를 분할매수 하며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에 따라
투자원본에 대한	투자 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손실위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시장위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LONE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유동성위험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불이행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위험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변동위험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재투자위험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펀드(ETF)	이 투자신탁의 주식부분은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며, 채권 부분은
투자에 따른 추적	채권 및 채권 관련 ETF에 주로 투자하여 운용될 예정입니다. ETF는 그 추종 지수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성과도 ETF에서 발생하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오차 발생 위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상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투자위험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111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 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NEU I LEN EGE I MUNIN.

#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이 투자신탁은 연속적으로 분할매수전략을 실행하는 투자신탁이므로 분할매수전략을 실행하는 동안				
	아래와 같은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주식투자비중을 채우지 못하고 동시에 사				
	전에 정하여진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정한 조건을 달성한 후 보유자산의 처분 과정에서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리밸런싱 후에도 보유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 시점 마다 주식 관련 자산의 투자비중이 다를 수 있으				
	며, 이로 인하여 수익자마다 리밸런싱까지의 누적운용성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식관련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거나 투자신탁의 신규 및 추가납입 또는 해지 및 환매를 위하여 주				
위험	식 관련 자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식 관련 자산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관련 자				
	산의 투자비중을 조정하는 기준이 된 누적성과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자금을 신규 또는 추가로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때의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투자 비				
	중만큼 동일한 비율로 신규 또는 추가로 납입된 자금에서 주식 관련 자산을 매입한 후 분할 적립 하는 전략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의 신규 또는 추가납입으로 인하여 주식 관련 자산을				
	마매하는 날의 시장상황(매매한 후의 주가지수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라 납입한 자금의 가치가 급				
	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리밸런싱 수행 시 불가피한 사유로 주식관련 ETF 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리밸런싱 결				
	정일 이후에도 주식관련 ETF의 비중이 초기수준으로 축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며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기회이익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매도하여 초기 투자 비중 수준으로 축소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실위험	상승하더라도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에는 주식시장 상승에 따라 수익률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b>T</b> II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전부 매				
주식 시청이이	도하여 초기 투자 비중 수준으로 축소합니다. 그러나,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주된 투자대상자				
실현이익 상이 위험	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 하락 등의 이유로 주된 투자대상자산 매도로 인한 실현이익이 목				
증의 귀합 	표기준가격에 상당하는 이익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분할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므로 수익자의 투자시점에				
KOSPI200 지수	따라 투자신탁의 주식 관련 ETF의 투자비중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주식 관련 ETF 비중이 높은				
수익률과의	시점에 투자한 수익자는 높은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주식관련 ETF의 비중이				
괴리	낮은 시점에 투자한 수익자는 시장 상승 시 투자자의 실현수익률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분할매수기준	이 투자신탁은 특정시점의 KOSPI200 지수를 기준으로 KOSPI200 지수 추종 ETF를 활용하여 분할매수				
불일치 위험	전략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분할매수는 KOSPI200 지수가 아닌 KOSPI200 지수추종 ETF의				
	가격을 기준으로 분할매수가 발생되므로 그 차이에 의해 분할매수의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대금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전매네 <u>금</u> 변동위험	적용일까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건승귀임	경우 심지어는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되거나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환매연기 위험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고 환매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에 따라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까지 기간 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소규모펀드	집합투자기구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자산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위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위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임의 해지)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 신탁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특히, 상기 3,4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의무 해지)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이익 증대 등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증권대차 거래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위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시장위험(VaR)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최대손실예상액(VaR)은 <u>30.17%</u>로 시장위험 등급기준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02	1등급 → 2등급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5단계 → 6단계)
		-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
2017.09.29	2등급 → 4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0%이하 5%초과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변경
2020.10.13	4등급 → 3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5%이하 10%초과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변경
2021.10.08	3등급 → 2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_		25%이하 15%초과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변경
2023.10.12	2등급 → 3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5%이하 10%초과

		- 변동성(최대손실예상액)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변경			
2025.10.02	3등급 → 2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최대손실예상액(VaR)이 50%			
		이하 30% 초과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최대손실예상액(VaR) 기준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del>250</del>)를 곱해 산출
- ※ 상기 투자위험등급은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후 매결산시마다 최대손실예상액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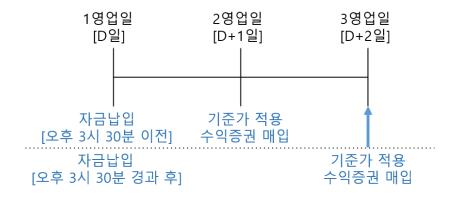
####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에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가)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 일)로부터 2 영업일(D+1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나)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 일)로부터 3 영업일(D+2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 (3) 종류별 모집제한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Class)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제한없음((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선취-온라인(Ae)	온라인 전용(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 전용
	법 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i)	관한 법률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5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1(연금저축))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지도 이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은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AA-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법

	제 405 포이 그런데 이번 나타겠나요 ㅇㅇㅂㄴ 나타이지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 나. 환매

#### (1)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구분	중도환매	중도환매시	중도환매	
	불가	비 <del>용</del> 발생	허용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	-		

<sup>※</sup> 환매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 일)로부터 2 영업일(D+1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 영업일(D+3 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나)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 일)로부터 3 영업일(D+2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 영업일(D+3 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 상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거래소가 예상치 못한 사유(천재지변 등)로 휴장될 경우 환매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4)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7)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The field in Ed X day							
구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매영업일 공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또는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nh-						
	amundi.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펀드간 판매보수가 차등 적용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각 종류간에 기준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
-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및 해외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채무증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관련법령에 따라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자가 제공한 가격 (1) 채권평가회사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3) 신용평가업자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5)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6) (1)~(5)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7) (1)~(6)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율					
구분		선취판	후취판매	전환	환매		
		매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	-			
++#211-4-42		0.8%이내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	-			
114211242	(710)	0.4%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i)	-	-	-			
	(S)	-	3년미만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_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납입금액의	-	-			
		0.4%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	-	-			
부과시기		매입시	환매시	전환시	환매시		

<sup>※</sup>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8% (Class A 기준) 및 납입금액의 0.4% (Class Ae, AG 기준) 범위 이내에서 판매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Class S 의 후취판매수수료 관련 사항: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 하며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른 목적식 투자고객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의 범위 내에서 투자신탁 판매회사의 재량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연간, %)									
명칭		보수			기타 총보수	동종	합성	증권		
(클래스)	집합투자	판매	신탁	일반사무	총보수	비용	• 비용	유형	총보수	거래
업자	회사	업자	관리회사	중포구	-,0	10	총보수	• 비용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4000	0.4000	0.0200	0.0130	0.8330	0.0060	0.8390	0.7100	0.9290	0.0022
수수료선취-온라인(Ae)	0.4000	0.2000	0.0200	0.0130	0.6330	0.0058	0.6388	0.4700	0.7288	0.00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4000	0.8000	0.0200	0.0130	1.2330	0.0060	1.2390	1.0000	1.3290	0.002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4000	0.4000	0.0200	0.0130	0.8330	0.0057	0.8387	0.6000	0.9287	0.00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4000	0.0300	0.0200	0.0130	0.4630	0.0061	0.4691	-	0.5591	0.0025
기관(Ci)	0.4000	0.0300	0.0200	0.0130	0.4030	0.0001	0.4091	ı	0.5591	0.002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4000	0.1500	0.0200	0.0130	0.5830	0.0036	0.5866	-	0.6766	0.0016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개인연금(S-	0.4000	0.0900	0.0200	0.0130	0.5230	0.0043	0.5273	-	0.6173	0.0025
P1(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4000	0.3000	0.0200	0.0130	0.7330	0.0059	0.7389		0.8289	0.0023
개인연금(C-P1(연금저축))	0.4000	0.3000	0.0200	0.0130	0.7550	0.0039	0.7509	-	0.0209	0.00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	0.4000	0.1500	0.0200	0.0130	0.5830	0.0059	0.5889	-	0.6789	0.0021
P1e(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4000	0.2800	0.0200	0.0130	0.7130	0.0060	0.7190		0.8090	0.0024
퇴직연금(C-P2(퇴직연금))	0.4000	0.2000	0.0200	0.0130	0.7130	0.0000	0.7190	-	0.0030	0.00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	0.4000	0.1400	0.0200	0.0130	0.5730	0.0061	0.5791	-	0.6691	0.0024
P2e(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4000	0.0000	0.0200	0.0130	0.4330	0.0061	0.4391	_	0.5291	0.0025
랩(Cw)	0.4000	0.0000	0.0200	0.0130	0.4330	0.0001	0.4331	-	0.3231	0.0023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4000	0.2200	0.0200	0.0130	0.6530	0.0061	0.6591	_	0.7491	0.0025
무권유저비용(AG)	0.4000	0.2200	0.0200	0.0130	0.0330	0.0001	0.0391	-	0.7431	0.00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4000	0.4500	0.0200	0.0130	0.8830	0.0061	0.8891		0.9791	0.0025
무권유저비용(CG)	0.4000	0.4300	0.0200	0.0130	0.0030	0.0001	0.0031	-	0.9791	0.002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퇴직연금(S-	0.4000	0.0800	0.0200	0.0130	0.5130	0.0000	0.5130	-	0.6030	0.0025
P2(퇴직연금))										
지급시기	매 3 개울	매3 개월 후급, 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며,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상기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한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 중 가장 큰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3.09.22 ~ 2024.09.21]

주2)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성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내역 (단위: 천원)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증권거래비용	Repo·콜·대차 또는 대주·현금 등 중개수수료 등	1,194
	(다만,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	

	수수료 계약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환급되는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금융비용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 등	-

- 상기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한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 중 가장 큰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3.09.22 ~ 2024.09.21]
- 상기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연도: 2023.09.22 ~ 2024.09.21]
-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 합성 총보수·비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의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의 추정은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을 기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을 순자산총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 대비 각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약 [0.09]%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상기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회계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순 추정치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로 인한 실제발생 비용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전월말기준)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A)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65	253	345	540	1,104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74	272	374	590	1,213
수수료선취-온라인	(4.)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5	173	244	395	833
	(Ae)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ㆍ비용	114	192	272	445	9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6)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7	259	395	684	1,506
	(C)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136	278	424	734	1,615
	(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6	175	269	467	1,0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95	194	298	517	1,150
A A ZUII Z O E ZUU ZIZ	(Ci)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8	98	151	263	5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ㆍ비용	57	117	180	314	70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6)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0	123	188	328	735
	(S)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ㆍ비용	69	142	217	379	8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4	111	169	295	663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ᆔᆔᄼᄼᄀᄗ	<u> </u>	I	T	I	T 1
		판매수수료 및	63	129	198	346	776
		합성총보수ㆍ비용					
	(C-P1(연금저축))	판매수수료 및	76	155	237	412	9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85	174	266	462	1,032
		합성총보수ㆍ비용					
		판매수수료 및	60	123	189	330	7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총보수 • 비용					
	, , , , , , , , , , , , , , , , , , , ,	판매수수료 및	70	142	218	380	851
		합성총보수ㆍ비용					
		판매수수료 및	74	151	231	401	8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총보수ㆍ비용					
	. ,	판매수수료 및	83	169	260	451	1,008
		합성총보수ㆍ비용					,
	(C-P2e(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59 69	121	186	324	72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총보수 • 비용					
		판매수수료 및		140	215	375	839
		합성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45 54	92	141	246	5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총보수・비용					
112 131 == 12 1		판매수수료 및		111	170	297	668
		합성총보수·비용			170	231	000
		판매수수료 및	107	177	250	406	85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총보수・비용		. , ,			
	(· · · · · )	판매수수료 및	116	196	279	456	969
		합성총보수·비용	. 10	150	213	150	303
		판매수수료 및	91	186	285	494	1,0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총보수・비용	<i>J</i> 1	100	203	7.7	1,033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0)	판매수수료 및	100	205	314	545	1,210
		합성총보수·비용	100	203	<i>1</i> 14	J4J	1,410
		판매수수료 및	53	108	165	288	6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총보수・비용	33	100	105	200	043
- 구구표미중구-군다한규피-되역원급 		판매수수료 및	62	126	104	338	759
		합성총보수・비용	02	126	194	330	159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2) [종류 A 와 종류 C]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 년 10 개월]이 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와 종류 Ce]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 년 10 개월] 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주 3) [종류 A]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8%]를 가정하여 산출하고, [종류 Ae, AG]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4%]를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4) Class S 수익증권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주 5) 상기 예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기간 10년 동안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 년 11 월 9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도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8%, 지방소득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Class C-P1, C-P1e, S-P1 가입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 외 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 1,800 만원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h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세액공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1.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2.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분리과세한도	- 연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 연 1,500 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4 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 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66 조제 1 항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Class C-P2, C-P2e, S-P2 가입자에 한함)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다만,「소득세법」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0기( 2023.09.22 - 2024.09.21 )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 9기( 2022.09.22 - 2023.09.21 )	우리회계법인	적정
제 8기(2021.09.22 - 2022.09.21)	삼화회계법인	적정

#### 가. 요약재무정보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0기	제 9기	제 8기					
8 =	( 2024.09.21 )	( 2023.09.21 )	( 2022.09.21 )					
운용자산	46,957,823,569	53,046,474,849	51,177,353,805					
증권	44,828,580,970	46,315,036,855	47,659,276,45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129,242,599	6,731,437,994	3,518,077,35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668,066	12,009,229	4,122,562					
자산총계	46,961,491,635	53,058,484,078	51,181,476,367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5,672,976	118,093,938	31,602,213					
부채총계	25,672,976	118,093,938	31,602,213					
원본	41,509,253,160	48,305,038,229	50,778,881,854					
수익조정금	-522,889,793	36,323,743	213,911,165					
이익잉여금	5,949,455,292	4,599,028,168	157,081,135					
자본총계	46,935,818,659	52,940,390,140	51,149,874,154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0기	제 9기	제 8기				
8 7	( 2023.09.22 - 2024.09.21 )	( 2022.09.22 - 2023.09.21 )	( 2021.09.22 - 2022.09.21 )				
운용수익	3,058,183,521	4,993,455,373	-13,106,554,839				
이자수익	121,442,810	226,836,902	42,469,821				
배당수익	750,485,438	687,009,307	697,952,245				
매매/평가차익(손)	2,186,255,273	4,079,609,164	-13,846,976,905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980,000	1,980,000	1,980,00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980,000	1,980,000	1,980,000				
당기순이익	3,056,203,521	4,991,475,373	-13,108,534,839				
매매회전율	2.45	0.00	0.00				

[단위 : 원, %]

- 주1) 요약 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주2) 위 재무재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주3) "가. 요약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4) "가. 요약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5)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5)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발생내역 없음)
- 주6)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발생내역 없음)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단위: 백만원, %)

	당기( 2	2023.09.22 -	2024.09.21 )	전기( 2022.09.22 - 2023.09.21 )			
구분	거래	거래비용		거래	거래비용		
	금액(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3,672	1.1939	0.0325	11,357	3	0.0254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합계	3,672	1.1939	0.0325	11,357	3	0.0254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 <주식의 매매회전율>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수량	금액	수 승	금액(A)	(B)	게게되 [ 글(저())	평균 매매회전율
0	0	142	1	41	2.45	32.08

주1)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기준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분기영업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분기별 누적 평균 매매회전율을 공시한 자료입니다.

## 나. 재무상태표

투자신탁명 :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단위:원]

과 목	제10기( 20		제9기( 20:		제8기( 20	
	급	액	中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2,129,242,599	2,129,242,599	6,731,437,994	6,731,437,994	3,518,077,350	3,518,077,350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38,020,510 44,790,560,460	44,828,580,970	38,887,700 46,276,149,155	46,315,036,855	42,939,590 47,616,336,865	47,659,276,455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3,668,066	3,668,066	12,009,229	12,009,229	4,122,562	4,122,562
자 산 총 계 부 채 운용부채		46,961,491,635		53,058,484,078		51,181,476,367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23,692,976 1,980,000	25,672,976	116,113,938 1,980,000	118,093,938	29,622,213 1,980,000	31,602,213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25,672,976		118,093,938		31,602,213
자 본  1. 원 본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발행좌수 당기: 41,509,253,160 좌 전기: 48,305,038,229 좌 전전기: 50,778,881,854 좌) (기준가격 당기: 1,116.23 원 전기: 1,076.92 원 전전기: 1,000.08 원) 자 본 총 계	41,509,253,160 5,426,565,499 이익잉여금 수익조정금	5,949,455,292 -522,889,793 46,935,818,659	48,305,038,229 4,635,351,911	4,599,028,168 36,323,743 52,940,390,140	50,778,881,854 370,992,300	157,081,135 213,911,165 51,149,874,15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6,961,491,635		53,058,484,078		51,181,476,367

## 다. 손익계산서

투자신탁명 :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단위:원]

과 목	제10기( 2023.09	.22-2024.09.21 )	제9기( 2022.09.	22-2023.09.21 )	제8기( 2021.09.	22-2022.09.21 )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121,442,810 750,485,438	871,928,248	226,836,902 687,009,307	913,846,209	42,469,821 697,952,245	740,422,066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146,260	2,541,409,003	125,689	6,157,373,763		94,282,316
4. 지분증권평가차익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2,539,253,519		6,005,379,667 151,868,407		94,282,316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82,817	355,153,730		2,077,764,599	12,268,619,702	13,941,259,221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355,070,913		2,077,764,599		1,672,639,519	
운 용 비 용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3,056,203,521		4,991,475,373		-13,108,534,839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73627042		0.103332397		-0.25814934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단위:억좌, 억원]

	_ 15.5 E E	" 1 0 - 1		_ "			. –	111 1-17 1-1
	71717	5 잔고		회계기		기간말 잔고		
기간	기인의	: <u>(1</u> 11	설정(	발행)	환	매	기인를	: U.T.
715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7
2023.09.22 - 2024.09.21	483	520	74	84	142	165	415	469
2022.09.22 - 2023.09.21	508	508	75	79	100	107	483	529
2021.09.22 - 2022.09.21	577	722	106	122	175	202	508	511

(주1) 2023.09.22 - 2024.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62,824,350좌/181,750,491원

(주2) 2022.09.22 - 2023.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17,169,681좌/556,951,677원

(주3) 2021.09.22 - 2022.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77,238,038좌/77,244,308원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단위:억좌, 억원]

	기간초	자그	회계기간 중				기간밀	トエトコ
기간	기인의	: UI	설정(	발행)	환	매	기인를	i 10 Tr
715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b>0</b> 7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
2023.09.22 - 2024.09.21	214	231	21	24	65	76	170	191
2022.09.22 - 2023.09.21	230	230	34	36	50	54	214	233
2021.09.22 - 2022.09.21	232	292	44	51	47	54	230	230

(주1) 2023.09.22 - 2024.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48,015,702좌/53,694,037원

(주2) 2022.09.22 - 2023.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65,655,259좌/178,452,125원

(주3) 2021.09.22 - 2022.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59,833,585좌/59,833,585원

수수료선취-온라인(Ae) [단위:억좌, 억원]

	기간초 잔고			회계기	간 중		기간말 잔고	
기간	기인크	- 43 Tr	설정(	발행)	환	매	기단리	i GT
715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b>0</b> 7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9 7
2023.09.22 - 2024.09.21	11	11	2	2	6	7	6	7
2022.09.22 - 2023.09.21	10	10	2	2	2	2	11	11
2021.09.22 - 2022.09.21	8	10	3	4	1	1	10	10

(주1) 2023.09.22 - 2024.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2,054,203좌/2,299,780원

(주2) 2022.09.22 - 2023.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0,355,671좌/11,151,190원

(주3) 2021.09.22 - 2022.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234,622좌/5,234,622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단위:억좌, 억원]

	기간초 잔고			회계기		기간밀	ᅡᄍᄓ	
기간	7153	: 10 Tr	설정(	발행)	환	-매	기단를	1.57
712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i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3.09.22 - 2024.09.21	40	42	3	4	11	12	32	36
2022.09.22 - 2023.09.21	43	43	5	5	8	9	40	43
2021.09.22 - 2022.09.21	43	53	8	9	7	8	43	43

(주1) 2022.09.22 - 2023.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1,933,470좌/12,781,818원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단위:억좌, 억원]

	フレフトス	5 잔고		회계기	간 중		기간밀	ᅡ자고
기간	기인크	- 43 Tr	설정(	발행)	환	매	기단리	1.57
715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i	(출자지분수)	i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
2023.09.22 - 2024.09.21	8	8	3	3	5	6	5	6
2022.09.22 - 2023.09.21	7	7	1	2	1	1	8	8
2021.09.22 - 2022.09.21	8	10	2	3	3	4	7	7

(주1) 2023.09.22 - 2024.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220,335좌/1,364,723원

(주2) 2022.09.22 - 2023.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076,078좌/6,541,990원

(주3) 2021.09.22 - 2022.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385,209좌/2,385,209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ℂ**i)

[단위:억좌, 억원]

	기간초	동자고		회계기	간 중		기간밀	ᅡ자그
기간	7123	- 6-22	설정(	발행)	환	매	712 8	: 22
715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 i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b>0</b> 7	(출자지분수)	9 7
2021.09.22 - 2022.09.21	100	101	0	0	100	93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단위:억좌, 억원]

	フリフトオ	· 잔고		회계기	1간 중		기간밀	ᅡ자그
기간	7103	- 43 Tr	설정(	(발행)	환	매	기단리	: GT
710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84	(출자지분수)	84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64
2023.09.22 - 2024.09.21	0	0	0	0	0	0	0	0
2022.09.22 - 2023.09.21	0	0	0	0	0	0	0	0
2021.09.22 - 2022.09.21	1	1	0	0	1	1	0	0

(주1) 2023.09.22 - 2024.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27,955좌/31,570원

(주2) 2022.09.22 - 2023.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74,919좌/189,874원

(주3) 2021.09.22 - 2022.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4,311좌/14,416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연금저축))

[단위:억좌, 억원]

	기간초	다		회계기	기간 중		기간밀	ᅡ자그
기간	기원의	: <b>1</b> 111	설정(	(발행)	환	매	기인를	: OT
712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b>0</b> 7	(출자지분수)	
2023.09.22 - 2024.09.21	54	59	4	4	8	10	50	56
2022.09.22 - 2023.09.21	56	56	3	3	5	5	54	59
2021.09.22 - 2022.09.21	59	74	5	6	8	9	56	56

(주1) 2023.09.22 - 2024.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23,998,609좌/26,808,365원

(주2) 2022.09.22 - 2023.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55,740,973좌/60,022,436원

(주3) 2021.09.22 - 2022.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9,453,224좌/9,453,224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_
	71714	5 잔고		회계기	간 중		기간밀	+ <b>T</b> L ¬
기간	기원의	: OT	설정(	(발행)	환	매	기인를	i OT
715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PΫ
2023.09.22 - 2024.09.21	135	144	25	28	28	32	131	146
2022.09.22 - 2023.09.21	136	136	21	22	21	23	135	147
2021.09.22 - 2022.09.21	117	146	31	36	13	14	136	136

(주1) 2023.09.22 - 2024.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9,919,543좌/77,293,956원

(주2) 2022.09.22 - 2023.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269,001,270좌/286,744,592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단위:억좌, 억원]

	フリフトプ	 <sup>5</sup> 잔고		회계기		フレフトロ	· 잔고	
기간	7103	- G-F	설정(	발행)	환	-매	712 8	: 22E
712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94
2023.09.22 - 2024.09.21	0	1	0	0	0	1	0	0
2022.09.22 - 2023.09.21	1	1	0	0	0	0	0	1
2021.09.22 - 2022.09.21	1	1	0	0	0	0	1	1

(주1) 2022.09.22 - 2023.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467,010좌/503,600원

(주2) 2021.09.22 - 2022.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323,252좌/323,252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1(연금저축))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	기간말 잔고				
	기원의	: 10 Tr	설정(	(발행)	환	매	기인를	기간될 산고	
712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97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3.09.22 - 2024.09.21	0	0	0	0	0	0	0	0	
2022.09.22 - 2023.09.21	0	0	0	0	0	0	0	0	
2021.09.22 - 2022.09.21	0	0	0	0	0	0	0	0	

(주1) 2023.09.22 - 2024.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32,593좌/137,415원

(주2) 2022.09.22 - 2023.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94,894좌/194,894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연금저축))

[단위:억좌, 억원]

	기간초 잔고			회계기	기간말 잔고					
기간	7103	- G-F	설정(	발행)	환	-매	712 8			
712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	(출자지분수)			
2023.09.22 - 2024.09.21	6	6	1	1	2	2	5	5		
2022.09.22 - 2023.09.21	7	6	1	1	1	1	6	6		
2021.09.22 - 2022.09.21	6	7	2	2	1	1	7	6		

(주1) 2023.09.22 - 2024.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981,212좌/3,093,751원

(주2) 2022.09.22 - 2023.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69,158좌/369,158원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7171-3	5 잔고		회계기	기간말 잔고				
기간	기인의	: 10 Tr	설정(	발행)	환	매	기단를	· 잔고 금액 21	
715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그애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b>-</b> 4	(출자지분수)	<b>6</b> 4	(출자지분수)		
2023.09.22 - 2024.09.21	21	21	9	9	9	9	21	21	
2022.09.22 - 2023.09.21	24	21	5	5	8	7	21	21	
2021.09.22 - 2022.09.21	24	27	10	10	10	10	24	21	

(주1) 2023.09.22 - 2024.09.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7,027,068좌/17,026,894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5-P2(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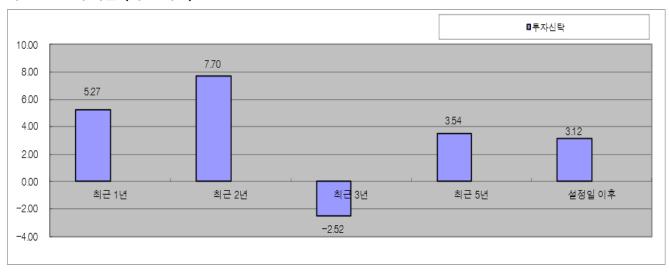
	기간초 잔고			회계기	기간말 잔고					
기간	기인의	5 OT	설정(	발행)	환	매	기신들			
715	좌수	금액	좌수	좌수 금액 좌수 금액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b>6</b> 7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3.09.22 - 2024.09.21	0	0	0	0	0	0	0	0		
2022.09.22 - 2023.09.21	0	0	0	0	0	0	0	0		
2021.09.22 - 2022.09.21	0	0	0	0	0	0	0	0		

<sup>(</sup>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712	23.09.23 ~ 24.09.22	22.09.23 ~ 24.09.22	21.09.23 ~ 24.09.22	19.09.23 ~ 24.09.22	14.09.22 ~ 24.09.22
투자신탁	5.27	7.70	-2.52	3.54	3.12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4.77	13.75	12.95	14.92	12.18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4.41	6.81	-3.34	2.67	2.26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4.77	13.75	12.95	14.92	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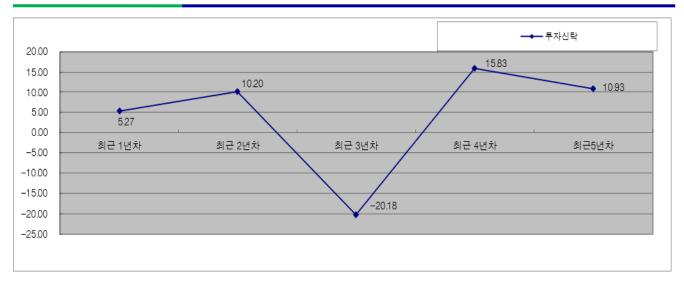
NH-Amundi 스마트인베스터5.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온라인(Ae)	4.61	7.03	-3.14	2.88	2.65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4.77	13.75	12.95	14.92	12.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4.00	6.39	-3.73	2.26	1.85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4.77	13.75	12.95	14.92	12.1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4.41	6.82	-3.34	2.68	2.42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4.77	13.75	12.95	14.92	12.2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4.67	7.09	-3.09	2.94	2.50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4.77	13.75	12.95	14.92	12.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연금저축))	4.51	6.92	-3.24	2.78	2.36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4.77	13.75	12.95	14.92	12.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4.53	6.94	-3.22	2.80	2.33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4.77	13.75	12.95	14.92	12.3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1(연금저축))	4.73	7.15	-3.03	3.00	1.28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4.77	13.75	12.95	14.92	13.6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연금저축))	4.66	7.08	-3.10	2.93	1.12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4.77	13.75	12.95	14.92	13.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4.67	7.09	-3.09	2.94	0.62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4.77	13.75	12.95	14.92	13.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4.76	7.18	-3.00		-0.92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4.77	13.75	12.95		12.44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이며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 ] 71.70]
71.74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기간	23.09.23 ~ 24.09.22	22.09.23 ~ 23.09.22	21.09.23 ~ 22.09.22	20.09.23 ~ 21.09.22	19.09.23 ~ 20.09.22
투자신탁	5.27	10.20	-20.18	15.83	10.93
비교지수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4.41	9.28	-20.86	14.87	9.99
비교지수	-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4.61	9.50	-20.70	15.10	10.21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4.00	8.85	-21.19	14.42	9.54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4.41	9.29	-20.86	14.87	9.99
비교지수	-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4.67	9.56	-20.66	15.16	10.27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1(연금저축))	4.51	9.39	-20.78	14.99	10.10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퇴직연금))	4.53	9.41	-20.76	15.01	10.12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1(연금저축))	4.73	9.63	-20.60	15.24	10.35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1e(연금저축))	4.66	9.56	-20.66	15.16	10.27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퇴직연금))	4.67	9.57	-20.65	15.17	10.28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4.76	9.67	-20.58	7.77	
비교지수	-	-	-	-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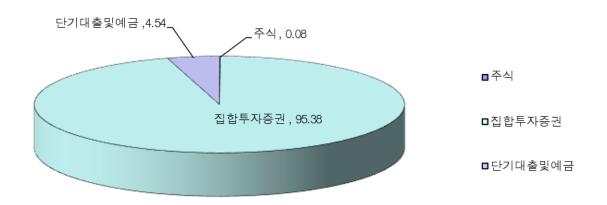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5)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2024.09.21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증권 파생상품		특별	자산	단기대출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자산	기타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KRW	0	0	0	448	0	0	0	0	0	21	0	470
KNVV	(0.08)	(0.00)	(0.00)	(95.38)	(0.00)	(0.00)	(0.00)	(0.00)	(0.00)	(4.54)	(0.00)	(100.00)
합계	0	0	0	448	0	0	0	0	0	21	0	470
합계	(0.08)	(0.00)	(0.00)	(95.38)	(0.00)	(0.00)	(0.00)	(0.00)	(0.00)	(4.54)	(0.00)	(100.00)

- 주1)()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 4)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 2024.09.21 현재 / 단위 : 억원,%]

_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화학	0	59.51
2	음식료품	0	13.48
3	유통업	0	6.86
4	철강,금속	0	6.24
5	금융업	0	4.50
6	전기,전자	0	4.14
7	의약품	0	2.08
8	비금속광물	0	1.80
9	기계	0	1.22
10	서비스업	0	0.11
11	기타	0	0.06
	합 계	0	100.00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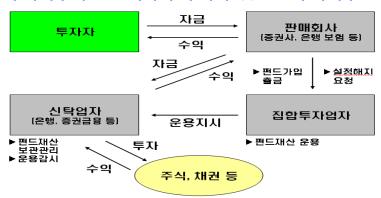
5)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6)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7)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회사명	NH-Amundi자산운용(주)					
주소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 (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10층)				
연락처		연락처 : 02-368-3600 (www.nh-amundi.com)				
	2002.04 2003.01	농협과 CAAM간 자산운용회사 설립에 관한 MOU체결NH농협금융지주와 Amundi의 합작법인 설립※ Amundi : 프랑스 크레디아그리꼴(CA) 금융그룹의 자산운용 자회사, 2010. 01CAAM에서 Amundi로 사명 변경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금융감독위원회)				
회사연혁	2003.04 2006.09 2007.08 2009.01 2009.06 2010.01 2012.03 2015.08 2015.10 2016.05 2017.07 2018.02 2018.03 2018.11 2018.12 2019.02	영업개시 및 첫 펀드 설정 국내 대형 연기금 SRI펀드 운용사 선정 NH-CA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수탁고 10조원 돌파 국내최초 공모 레버리지 펀드 출시 'Amundi자산운용'으로 재출범 (모회사인 Credit Agricole과 Societe Generale의 자본출자) "1.5배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 금융감독원 선정 2009년 '최우수 금융신상품상' 수상 'NH농협금융지주'로 새롭게 출범 (모회사인 농협중앙회가 7개의 금융자회사로 구성)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대체투자 사업 진출 NH-CA자산운용㈜에서 NH-Amundi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모회사인 Amundi의 Pioneer(파이오니어) 인수 완료 : 자산규모 1,600조원의 글로벌 Top8 운용사로 발돋움 공무원연금공단 '사회책임투자형' 우수운용사 선정 HANARO ETF 출시 사모 헤지펀드 출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KG제로인 2019 대한민국펀드어워즈 '대상' 수상 매일경제 2019 매경증권대상 '펀드부문 대상' 수상				

	2022.01	수탁고 50조원 돌파	
자본금			400억
주요주주			농협 60%, Amundi 40%

#### 나. 주요 업무

#### ■ 집합투자업자 업무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등

- 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③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집합 투자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④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 ①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 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 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펀드파트너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23. 12말	′22. 12말	항 목	′23. 12말	′22. 12말		
현금 및 예치금	73,831	70,578	영업수익	86,309	85,481		
유가증권	51,474	49,515	영업비용	50.706	40 442		
유형자산	1,369	1,221	8 합미 <del>8</del>	50,796	49,442		

기타자산	23,521	21,906	영업이익	35,513	36,039
자산총계	150,195	143,220	영업외수익	517	63
예수부채	-	-		317	03
기타부채	20,600	20,896	영업외비용	361	328
부채총계	20,600	20,896	법인세	9,112	9,189
자본금	40,000	40,000		3,112	3,103
이익잉여금	89,595	82,324	당기순이익	26,555	26,585
자본총계	129,595	122,324			

#### 라. 운용자산 규모

[ 2024.09.22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특별자산 부동산파 및특별자			혼합자산 및혼합자	다기근유	총 계						
1 5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디 0 생	산파생	산파생	0	0
수탁고	26,391	89,908	5,598	0	20,371	50,382	0	10,122	65,918	8,542	145,542	422,774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 (1) 회사 개요

회사명	신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 길 20
구도 및 한국시	02-756-0506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com

#### (2)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3) 의무와 책임

#### [의 무]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개요

( )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TT & DEAN	02-2180-0400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fundpartners.com	

#### (2)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3)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엔자산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 화재보험협회빌딩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 현대빌딩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2층

	4층	11층		
연락처	02-3215-1400	02-2251-1300	02-398-3900	02-721-5300
설립일	2000. 6. 20.	2000. 5. 29	2000. 6. 16	2011. 6. 9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www.koreaap.com	www.nicepricing.co.kr	www.fnpricing.com

## (2)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 20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1. 수익자에게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 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본시장법 제 190 조제 5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 229 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2)-1.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4)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5)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6)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5.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집합투자규약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 수익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 1.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 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합투자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일로 역산하여 365일 동안 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동안 보수율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수율을 적용합니다.
- 2. 보상기간: 365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 3. 지급시기: 변경일 전일

####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 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주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 135 조제 2 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집합 투자기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 87 조제 8 항제 1 호 · 제 2 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 [결산서류]

- 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재무상태표
- 2) 손익계산서
- 3) 자산운용보고서
- 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말일
- 2) 투자신탁의 해지일

####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 제 1 호의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 ⑤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 내용
- ④ 법 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 ⑤ 법 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항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1 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11)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7141-1 011	ИСП ОП	7141 6 7
NH투자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주식	1,102
신한은행	수탁회사	위탁거래	주식	2

- ※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시행령 제 84조)
-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2.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 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관에서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
- 5.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국가재정법」제 81 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의 100 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6.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구분	내용
투자증권거래	1)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 마케팅 비용
	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 등)
	⑤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용 어 풀 이

용 어	내 용
7057117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금융투자상품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 번드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T 10 L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기준가 산정 통화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을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00/171117/17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ठे त्रे ठ	판매수수료를 클래스별로 달리 적용하는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이자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및 추가 불입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환매수수료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을 유지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용어	내 용
3 1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벤치마크(Benchmark, BM)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 등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비교지수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와는 다르게 해당 투자신탁의 단순 성과비교시 참조를 위한 것으로서, 해당
차ㅈㄲᄉ	투자신탁이 반드시 참조지수와 유사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참조지수	또한, 수익자에게 참조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레버리지효과	효과를 말합니다.
네미디지표피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